

제27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(2022. 3. 23.)에서  
의결된 무안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 
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2. 3. 24.

무안군의회 의장



김대형

무안군의회 규칙 제2022-7호

덧붙임 : 무안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1부.

## 무안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

무안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윤리특별위원회 구성·운영)** ① 「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8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 1명을 포함한 5명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 등의 선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「무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3조(위원회 개최의 통지)**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 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·위원장 및 의원(이하 “심사요구의원”이라 한다.)
2.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대상자(이하 “심사대상의원”이라 한다.)

**제4조(심문)**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된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최일 3일전 까지 [별지 제1호]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발언 및 변명)**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[별지 제2호] 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.

**제6조(증빙서류 등의 제출)**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·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**제7조(통고)**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,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.

**제8조(제척과 회피)**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.

**제9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)**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.

1.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학계, 법조계,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
3.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2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⑥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10조(의견수렴)**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.

**제11조(비밀엄수 의무)**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2조(위임)**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윤리심사·징계대상 의원 출석요구서

대 상 자 인적사항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연 락 처	
출 석 요구사유				
출석일시				
출석장소				
그 밖의 사항				
<p>「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.</p> <p>20 . . .</p> <p>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</p>				

## 발언(변명) 신청서

심사요구 (대상)의원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연 락 처	
	구 분	1. 심사요구 의원 ( ) 2. 심사대상 의원 ( ) 3. 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( )		
발언(변명) 요 지	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			
<p>「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요구(대상)의원 등의 발언(변명)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>20 . . .</p> <p>제출자 성명 : (서명 또는 인)</p> <p>무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</p>				